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조규홍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

경찰관서의 장이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의사상자 직권 신청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0106호, 2024.1.23. 공포, 7.24. 시행)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, 「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개정(대통령령 제34912호, 2024.9.26. 공포, 9.26. 시행)됨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명을 정비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법 제5조제5항”를 “법 제5조제6항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사회복지정책실장”을 “인구·사회서비스정책실장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인청신청”을 “인정신청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법 제5조제4항”를 “법 제5조제5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법 제5조제4항”를 “법 제5조제5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조(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)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”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신체의 부상을 말하며, <u>법 제5조제5항</u> 에 따라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을 제1급부터 제9급까지로 한다.		제2조(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)	-----	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-----, <u>법 제5조제6항</u> 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-----.
제3조(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구성) ① <u>법 제4조제5항</u> 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<u>사회복지정책실장</u> 이 되고,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<u>사회서비스정책관</u> 이 된다.		제3조(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구성) ①	-----	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----- <u>인구·사회서비스정책실장</u> 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-----.
② (생 략)		② (현행과 같음)		
제9조(의사상자 인정신청 등) ① <u>법 제5조제1항</u> 에 따라 의사상자 <u>인정신청</u> 을 하려는 자는 의사상자인정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		제9조(의사상자 인정신청 등) ①	-----	-----
			-----	----- <u>인정신청</u> 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-----

부하여 그 주소지 또는 구조
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(「제
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
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
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.
이하 같다)·군수·구청장(자
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
같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~⑤ (생략)

제10조(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
보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
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의사상
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였을
때에는 그 사실을 제9조제1항
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·
군수·구청장 및 제9조제3항
에 따른 시·도지사에게 통보
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구조행
위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
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통
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보
받은 사실을 제9조제1항에 따
른 의사상자 인정신청인(이하
“인정신청인”이라 한다)의 주
소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

-----.

②~⑤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
보 등) ① -----
법 제5조제5항-----

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
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.

②~ (생략)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
제4항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
정결정하였을 때에는 보건복
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의사자 증서 및 의사자 유족
증 또는 의상자 증서 및 의상
자증(이하 이 항에서 “의사상
자 증서등”이라 한다)을 발급
하여 의사상자 증서등의 발급
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
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송부
하여야 하고, 의사상자 증서등
을 송부받은 시장·군수·구
청장은 이를 의사상자 증서등
의 발급 대상자에게 송부하여
야 한다.

④ (생략)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법 제5조
제5항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254